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㉔

신청기관

우정사업본부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한 법제분석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⑨

신청기관

우정사업본부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한 법제분석

김 지 훈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한 법제분석

A Legal Analysis for Universal Postal Service

연구자 : 김지훈(연구위원)
Kim, Ji-Hoon

2015. 10.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의미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우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 대체로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범위, 제공방법 및 비용 부담·보전 등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임
- 특히 전기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들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이들 간에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하고 있음
- 우편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가 직접 우편서비스를 국가행정조직의 틀 내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한다는 전제가 성립될 수 없음
- 이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체로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를 위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소위 유보영역의 인정을 통한 해결방법을 택하여 왔음

- 즉, 전체 우편서비스 중 일정한 범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배타적인 영역으로 인정해주고, 해당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유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시키는 방법임
- 그러나 새로운 통신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인 우편시장의 유보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우편시장에도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시장 자유화 추세에 따라, 더 이상 유보영역의 설정을 통한 보편적 우편서비스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함
-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계속적·안정적으로 유지·운영하기 위한 비용의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함

II. 주요 내용

- 현행 우편 관련 법령은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우편법」을 바탕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이 이를 보완·보충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음
- 특히 일정한 범위의 우편서비스를 보편적 우편서비스로 규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일정한 요소, 예컨대 제공기준·이용조건·송달기준 등을 규율하고 있음

- 한편 보편적 우편서비스 재원조달 문제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는 소위 신서전장권을 포함하는 유보영역을 통해서 비용을 충당하고,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수익으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적자를 보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조항의 구조가 전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출가능성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손실전액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결과는 우편사업 특히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지속적·안정적 제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함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현행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효적인 비용보전 방안을 강구하거나 또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함

Ⅲ. 기대효과

- 다른 보편적서비스와는 달리 우편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조직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 및 유지를 위한 중장

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음

-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우편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선결문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주제어 : 보편적 서비스, 우편, 철도, 전기통신, 유보영역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 Most countries provide the general public universal service for communication which allows them to communicate with others at any time and any where and at a reasonable price. In Korea, Postal Service Act as well as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provide the basic postal service.
- In general, legal provisions on the universal service for people include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ways to provide it and charge imposed on users and other related issues.
- In the telecommunication sector, basic and universal service for telecommunication is provided by private provides not by the government.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and private operators have made effort to come up with standards to deal with cost-sharing methods for installation works of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and other works and provide services at a reasonable price.
- When it comes to the postal service, the government provides the postal service which is govern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For this reason,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is not the subject for cost-sharing.

- To deal with issues on operational and maintenance costs of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occurring to those service providers, the government offers preferential to them so that they could make up for costs of maintenance.
- With advancement of new types of communications, profits, which the service providers made, has dwindled gradually. Lowering boundaries of the postal service market has encouraged new comers to enter and promoted competition among providers. For these reasons, the government is no longer able to handle issues over maintenance costs of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in a stable manner, it is required to examine thoroughly the current postal service.

II. Main Contents

- The existing universal postal service is provided on the basis of the Postal Service Act, and supplemented by other legislations, such as other legislations such a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Postal Service, Act on the Entrustment of Services of Post Office Counters, and etc.

- Those acts specify requirements to carry out certain postal services which are designated as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for example, standards of providing services, terms of use, delivery and so on.
- The government designates organizations for postal services who are agencies that takes overall charge of postal services to provide financial resources to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According to related laws, it is allowed to use revenues of accounts operated by the National Postal Office just in case of losses are not filled by profits and earnings that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created.
- However, Article 14-2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2)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Postal Service does not clearly state disbursement of surplus earnings but only imply possibilities of using the surplus. As a result, the providers are not fully made up for their losses.
- In turn, it would undermine soundness of the universal postal services, which leads to crisis of the overall postal service directly govern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issues over losses of providers should be dealt with without delay.
- The problems that the postal service sector faces should be handled either by coming up with and implement practical me-

thods to make up for losses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universal postal service or by cutting expenditures.

III. Expected Effect

-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postal service that it is provided by a government organization, the paper proposes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From a mid-and-long term perspective, it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coming up future measures.
- What is also critical to handle problems is to understand that improving the universal postal service system is prerequisite to deal with underlying problems of the postal business.

➤ **Key Words** : the universal service, post, railroad, telecommunication, withholding reservation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15
제 2 장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관	17
제 1 절 보편적 서비스와 보편적 우편서비스	17
제 2 절 현행법령상 보편적 서비스 관련 제도 및 유사제도	19
1. 전기통신	19
2. 철 도	24
3. 수 도	27
4. 소 결	30
제 3 장 현행 법령상 우편사업 관련 주요내용	33
제 1 절 우편법	33
1.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33
2. 우편특권 등	35
3. 우편역무	37
제 2 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43
1. 우정사업 및 우정사업조직	43

2. 회계의 구분	44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45
4. 이익 및 손실의 처분	46
5. 우정사업의 위탁	46
제 3 절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47
1. 우체국창구업무	47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47
3. 위탁계약의 체결	49
제 4 절 소 결	49
제 4 장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제 1 절 보편적 우편서비스 관련 현황	51
제 2 절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문제점	55
제 3 절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개선방안	58
제 5 장 결 론	63
참 고 문 헌	6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과거의 우편은 전통적인 주요 통신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통신수단의 등장으로 점차 종래의 중요성이나 지위에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이렇듯 시대변화에 따라 통신수단으로서의 우편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미에 변화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우편이라는 통신수단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불가결한 통신수단이자 사회서비스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최근에 등장한 통신수단들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아직도 독자적인 사회적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의미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우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통상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법령에 규정함에 있어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범위, 제공방법 및 비용 부담·보전 등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일정한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나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러한 보편적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율을 한 후,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가 계속적·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전기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달리 대체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국가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

라 민간기업들이 제공하게 됨에 따라 이들 간에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가 직접 우편서비스를 국가행정조직의 틀 내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한다는 전제가 성립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체로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를 위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소위 유보영역의 인정을 통한 해결방법을 택하여 왔다. 즉, 전체 우편서비스 중 일정한 범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배타적인 영역으로 인정해주고, 해당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유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통신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인 우편시장의 유보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었고, 한편 우편시장에도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시장 자유화 추세에 따라, 더 이상 유보영역의 설정을 통한 보편적 우편서비스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계속적·안정적으로 유지·운용하기 위한 비용의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또는 국가재정을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으며,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분석과 궤를 같이 하면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주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비용보전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한 후, 현행 법령상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제도 및 유사제도를 전기통신·철도·수도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행 법령상 우편사업 관련 주요 내용을 「우편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범위·대상·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비용보전의 측면에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2장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관

제1절 보편적 서비스와 보편적 우편서비스

보편적 서비스란 일반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모든 이용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소득이나 신체적 특성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서비스 제공의 대상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장소적으로는 도시 뿐만 아니라 도서, 산간지역 등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적정한 요금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하며, 이용자가 지불가능한 요금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한다.¹⁾

참고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서는 보편적 역무를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4조제3항은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정도, ② 전기통신역무의 보급정도, ③ 공공의 이익과 안전, ④ 사회복지증진, ⑤ 정보화 촉진 등을 들고 있다.

한편 통신영역에서 보편적 역무의 관념은 통신시장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이해관계의 중첩·충돌 등의 속성이 반영된 복합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나 수도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이용하게 한다는 전통적인 급부행정의 정

1) 이상규,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704면

책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보편적 서비스 논의의 대부분은 형평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맞춰진다고 한다.²⁾

이러한 측면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행정권의 통제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익적 수요의 충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활동 또는 제도’로 정의되는 이른바 공공서비스 개념³⁾과의 관련하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관념은 대체로 그 기본원칙으로 평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적응의 원칙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적응의 원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사회구성원의 수요나 공익적인 관점에서 공공서비스의 기능이나 체계가 변화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기술적 발전이나 법체계상의 변화에 따라 공급되는 서비스의 질적·양적 개선이 가능함을 의미하며⁴⁾, 이는 곧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그 당시의 사회적 사정에 따라 바뀌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우편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구성해 본다면, 보편적 우편서비스는 개념적으로 ‘국내에서 모든 주민이 감당할만한 요금 수준(at an affordable price)에서 합리적으로 접근(reasonable access)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우편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⁵⁾

2) 조은기, 방송·통신 융합의 정책이념, 제9회 방송통신포럼자료, 2005, 4면

3) 김지훈, 방송통신의 융합과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공법적 고찰,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9, 54쪽.

4) 이광윤, 공공서비스 개념의 범세계화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1집, 2004, 372쪽.

5) 최종범,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한 소고, 우정정보65(2006 여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4쪽.

제 2 절 현행법령상 보편적 서비스 관련 제도 및 유사제도

1. 전기통신

(1) 개념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의 개념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⁶⁾

한편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⁷⁾

(2) 의무부과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⁸⁾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이러한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함⁹⁾) 또는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0호

7)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8)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1항

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00억원을 말함¹⁰⁾)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¹¹⁾

(3) 보편적 역무의 내용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 등을 고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¹²⁾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³⁾

1) 유선전화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통화권”) 안의 전화 서비스 중, ① 시내전화 서비스(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도서통신(島嶼通信) 서비스는 제외), ② 시내공중전화 서비스(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③ 도서통신 서비스(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에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한 전화 서비스 중, ① 기간통신역무¹⁴⁾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

1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

1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

1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1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14)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에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제외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화 서비스와 ②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기간통신역무 중 육지와 선박 사이 또는 선박과 선박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서비스 중, ①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시외전화 서비스”), ②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③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 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④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⑤ 인터넷전화 서비스, ⑥ 휴대인터넷 서비스 등을 말한다.

한편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 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¹⁵⁾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¹⁶⁾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한다.

1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1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¹⁷⁾ 이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¹⁸⁾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제공의 실적과 그 제공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¹⁹⁾

(5)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²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填)하기 위한 자금(“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한편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보전받으려는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 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

17)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

1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2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조

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 철도

(1) 개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공익서비스’²¹⁾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²²⁾

(2) 철도의 운영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한다.²³⁾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①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②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③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④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⑤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철도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²⁴⁾

2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보편적 역무(서비스)라는 용어 대신 공익서비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철도 분야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11호

2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2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제2항

(3)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1) 비용부담의 원칙

철도운영자²⁵⁾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공익서비스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²⁶⁾

2) 비용부담의 범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①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②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 ③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등이다.²⁷⁾

(4)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²⁸⁾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상계약에는 ①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②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25)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

2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2항

2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

등에 관한 사항, ③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철도산업위원회²⁹⁾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간의 보상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5) 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³⁰⁾

철도시설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가 철도시설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이익을 받는 자(“수익자”)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29)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로서, 동 위원회는 ① 철도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②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③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④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⑤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⑥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⑦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3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7조

철도시설관리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동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철도산업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수 도

(1)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³¹⁾³²⁾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³³⁾

31) 「수도법」 제12조제1항

32) 「수도법」 제17조는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49조는 공업용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민간사업자가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실무적인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즉, 수도사업은 전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인다.

33) 「수도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2)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³⁴⁾의 지정·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얻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부담을 위한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하면 ① 관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② 관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다른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③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도사업자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³⁵⁾

(3)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함)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수도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

34)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수도법」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및 제8조제1항

35) 「수도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³⁶⁾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를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³⁷⁾

(4) 공급규정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³⁸⁾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³⁹⁾

한편 일반수도사업자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⁴⁰⁾

36) 「수도법」 제23조제1항

37) 「수도법」 제23조제3항

38) 「수도법」 제38조제1항

39) 「수도법」 제38조제2항

40) 「수도법」 제38조제4항

(5) 급수의무⁴¹⁾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한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도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

수도(급수설비는 제외)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⁴²⁾

한편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⁴³⁾

4. 소 결

통신, 철도, 수도 등은 종래 국가에 의해서 생존배려의 차원에서 급부의 제공이 이루어지던 급부행정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41) 「수도법」 제39조

42) 「수도법」 제70조

43) 「수도법」 제71조제1항 및 제3항

통신이나 철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동일한 서비스가 민간사업자나 공사 등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고, 이러한 민간부문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공공적 성격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보편적 의무 관련 규정이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의 공익서비스 관련 규정은 해당 서비스의 공익적·공공적 성격을 확보하기 위한 공법적 지도원리 내지 한계원리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 의무의 성격을 갖는 내용을 규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급부를 계속적·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보의 방안도 아울러 규율하고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도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국가가 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편사업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

제 3 장 현행 법령상 우편사업 관련 주요내용

제 1 절 우편법

1.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1) 원 칙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장한다.⁴⁴⁾⁴⁵⁾ 누구든지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⁴⁶⁾

(2) 예 외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법률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⁴⁷⁾
- ㉡ 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⁴⁸⁾
- ㉢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⁴⁹⁾

44) 「우편법」 제2조제1항 본문

45) 「우편법」 제12조의3(권한의 위임)은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편법시행령 제9조의2(권한의 위임)는 우편법상의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46) 「우편법」 제2조제2항

47) 「우편법」 제2조제1항 단서

48) 「우편법」 제2조제5항 본문

49) 「우편법」 제2조제5항 단서

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우편이용자를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업무, ㉡ 교통이 불편한 지역 기타 우편물의 집배업무·운송업무 또는 발착업무(우편물을 구분 및 정리하는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우편물을 집배·운송 또는 발착하는 업무, ㉢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를 조제하는 업무 및 ㉣ 그 밖에 우편이용의 편의,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 및 우편사업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업무⁵⁰⁾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⁵¹⁾

㉤ 서신⁵²⁾(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우편법」 제45조의2에 따라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가 서신송달의 대가로 받는 요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⁵³⁾

50) 「우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르면 우편주문판매 공급업체의 선정 및 관리업무, 우표류를 이용한 광고우편의 모집 및 대리점 선정·관리업무, 전자우편물 내용의 출력·인쇄 업무 및 이를 봉투에 넣거나 봉합하는 업무 및 우편물의 환부 정보 제공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51) 「우편법」 시행령 제4조

52)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③ 서적(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었을 것, 발행인·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④ 상품의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포함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⑤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⑥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⑦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⑧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은 서신의 개념에서 제외됨에 유의하여야 한다(「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및 「우편법」 시행령 제3조).

53) 「우편법」 제2조제3항

2. 우편특권 등

(1) 우편물의 운송명령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철도·궤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 ㉡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로 자동차·선박·항공기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명할 수 있다.⁵⁴⁾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때에는 ㉢ 운송구간 및 운송횟수, ㉣ 출발 및 도착일시, ㉤ 우편물의 수량 또는 중량, ㉥ 우편물의 인수인계 장소 및 방법, ㉦ 운송료 및 그 지급방법, ㉧ 우편물 운송도중 우편물의 망실 또는 훼손시 국가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 ㉨ 기타 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우편물 운송요구서를 운송개시 5일전까지 운송을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요구할 수 있다.⁵⁵⁾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운송명령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운송구간에 적용되고 있는 운송요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⁵⁶⁾

(2) 우편물의 우선취급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해당 차량·선박·항공기에 실은 우편물을 그 목적지에서 내릴 때 또는 사고나 재해로 운송 도중에 바뀌 실을 때에는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뀌 실어야 한다. 또한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한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화물을 처분

54) 「우편법」 제3조의2제1항

55) 「우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56) 「우편법」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하여야 한다.⁵⁷⁾

(3)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차량·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도와줄 것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주고 받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 등은 우편관서 외의 다른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행정우편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 제공이나 그 밖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⁵⁸⁾

(4) 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차량·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우편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차량·선박 등은 도선장(渡船場), 운하, 도로, 교량이나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때에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우편물을 운송 중인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에서 도선(渡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⁵⁹⁾

57) 「우편법」 제3조의3

58) 「우편법」 제4조

59) 「우편법」 제5조

(5) 기 타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제세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⁶⁰⁾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검역을 받는다.⁶¹⁾

우편물의 발송·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⁶²⁾

3. 우편역무

(1)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⁶³⁾, ㉡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⁶⁴⁾, ㉢ ㉠과㉡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 그 밖에 대통령령⁶⁵⁾으로 정하는 우편물 등이다.⁶⁶⁾

60) 「우편법」 제7조
61) 「우편법」 제9조
62) 「우편법」 제10조
63) 통상우편물이란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포함)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우편법」 제1조의2제2호).
64)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우편법」 제1조의2 제3호).
65) 우편법 시행령에는 우편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에 관한 별도의 내용은 규율하지 않고 있다.
66) 「우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우편물의 수집·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⁶⁷⁾

1)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 교통, 사업 환경 등이 열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⁶⁸⁾

또한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이하 ‘우편물 송달기준’이라 한다)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교통상황·우편물처리 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 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⁶⁹⁾

2) 도서·산간오지등의 우편물 송달기준

우정사업본부장⁷⁰⁾은 도서·산간오지등 교통이 불편하여 우편물의 운송이 특히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 또는 지역상호간에 적용할

67) 「우편법」 제14조제3항

68)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69)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70) 「우편법」상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 중 우편업무의 위탁, 우편물의 운송 명령, 우편물이용의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정지,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군사우편역무의 제공, 우편금지 물품의 결정·고시, 우편물의 취급용적·중량·포장의 결정·고시 및 우편역무의 제공거절·제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행, 우편물 요금등의 감액, 우편관서의 지정,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및 고시, 우편관서의 지정, 우편번호의 결정 및 고시(변경 포함),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 변경 포함)의 시험적 실시, 업무수탁,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항 인정, 군사우편 요금수납, 해외특수지역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우표류의 발행·판매에 관한 공고, 수취인으로부터의 우편요금등을 징수하고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의 인정, 우편물배달 특례지역의 인정 등의 권한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다(「우편법」 제9조의2제1항).

우편물송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⁷¹⁾

3) 우편물 송달기준의 적용 예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정한다) 및 관보를 우편물정기발송계약에 따라 발송할 때에는 보통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이를 송달할 수 있다.⁷²⁾

4) 우편물 송달기준의 이행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종류별·지역별로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목표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행목표율의 달성도를 매년 1회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⁷³⁾

(2)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 ㉠과㉡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 ㉥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 그 밖에 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등이다.⁷⁴⁾

71) 「우편법」 시행규칙 제13조

72) 「우편법」 시행규칙 제14조

73) 「우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

74) 「우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1)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⁷⁵⁾

- ㉠ 등기취급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
- ㉡ 보험취급에는 세 종류가 있으며, 통화등기는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현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하고, 물품등기는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귀금속·보석·옥석 기타 귀중품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하며(이 경우 물품의 부피가 커서 보험등기봉투에 넣을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포장하여 물품등기로 할 수 있다), 유가증권등기는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수표·우편환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
- ㉢ 대금교환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현금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
- ㉣ 증명취급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하고, 배달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
- ㉤ 국내특급우편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상호간에 수발하는 긴급한 우편물로서 통상적인 송달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하기 위하여 접수된 우편물을 약속한 시간 내에 신속히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

75)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 ⑥ 특별송달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
- ⑦ 민원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
- ⑧ 모사전송우편은 우체국에서 서신·서류·도화 등의 통신문을 접수받아 수취인의 모사전송기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⑨ 우편주문판매는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 방송채널 등을 통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제품 등을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주문하고 생산자나 판매자는 우편을 통하여 주문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⑩ 광고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조제한 우표류 및 우편차량 또는 우편시설등에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광고를 게재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⑪ 전자우편은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봉합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⑫ 우편물방문접수는 발송인의 요청 또는 발송인과 발송인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⑬ 착불배달은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그 요금을 배달 시 수취인으로부터 수납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

- ㉓ 계약등기는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
- ㉔ 회신우편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받거나 서류를 인수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
- ㉕ 본인지정배달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
- ㉖ 우편주소 정보제공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이사 등 거주지 이전으로 우편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우편물을 변경된 우편주소로 배달하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변경된 우편주소정보를 제공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한다.
- ㉗ 우편물의 환부(還付) 정보 제공은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목록, 봉투를 스캔한 이미지 및 환부 사유 등 우편물의 환부 정보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조건

「우편법 시행규칙」은 제26조(등기취급)부터 제70조의16(우편물 환부 정보 제공의 방법)까지의 규정을 통하여 앞에서 언급한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별로 그 구체적인 이용조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3) 군사우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서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

을 포함)와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우편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일반우편요금의 2분의 1로 한다.⁷⁶⁾

제 2 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1. 우정사업 및 우정사업조직

우정사업이란 ㉠ 우편, ㉡ 우편환, ㉢ 우편대체, ㉣ 우체국예금, ㉤ 우체국보험,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과 ㉩ 우체국 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 및 정보처리업, ㉪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창고업·통관업·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 우표류·우편물·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 우체국사(郵便局舎)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 우정사업 자원을 이용한 불우이웃 지원 등 공익사업, ㉯ 다른 행정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⁷⁷⁾

우정사업조직이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⁷⁸⁾

76) 「우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7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7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이에 근거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설치

2. 회계의 구분

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우체국보험특별회계⁷⁹⁾(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로 구분한다.⁸⁰⁾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 우편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 차입금, ㉥ 전년도 이월금, ㉦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으로 구성되며,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 우편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우편사업의 기계화 및 전산화와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지출등으로 구성된다.⁸¹⁾

한편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은 ㉠ 우체국예금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의한 재산수입, ㉣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금, ㉤ 차입금, ㉥ 전년도 이월금, ㉦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으로 구성되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 우체국예금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우체국예금사업의 자동화·전산화 및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 제17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 차입금의

· 운영중에 있다.

79) 이를 위하여 별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 제정되어 있다.

8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8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상환금 및 이자, ㉠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⁸²⁾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46조⁸³⁾·제47조와 「정부기업 예산법」 제20조⁸⁴⁾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移用)하거나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목별

8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83)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84) 제20조(예산의 전용)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금액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이익 및 손실의 처분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⁸⁵⁾

5. 우정사업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⁸⁶⁾ 이 경우 위탁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⁸⁷⁾

다만, ㉠ 우정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개발·판매 및 그 부대사업, ㉡ 우체국보험 청약심사·계약관리 및 보험금 지급심사, ㉢ 우정사업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문화센터 운영, ㉣ 우정사업과 관련된 전자금융 서비스·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그 부대사업, ㉤ 우정사업과 관련된 시장의 분석·연구, ㉥ 우체국 콜센터 운영 및 고객관리 활동 지원, ㉦ 우표류 제작업무와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상품개발·운영 및 그 부대사업, ㉧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 지원, ㉨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업무 지원, ㉩ 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산 관리·운영, ㉪ 우편물의 방문접수, 배송 및 그 부대사업, ㉫

8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86)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87)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우표 전시회 개최, 우표 전시관 설치·운영 및 우표 관련 웹사이트 구축·운영, ㉔ 우정사업과 관련된 공익사업 운영, ㉕ 우정사업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결산·회계 업무의 지원, ㉖ 우정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의 연구 및 국제협력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⁸⁸⁾

제 3 절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1. 우체국창구업무

우체국창구업무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㉑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채,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을 말함)의 판매 및 우편물의 접수, ㉒ 우편환(郵便換)의 발행과 지급 및 우편대체(郵便對替)의 납입과 지급, ㉓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㉔ 수입인지의 판매, ㉕ 2. 「우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업무 등의 업무를 말한다.⁸⁹⁾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㉑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㉒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㉓ 「주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

8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89)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치관리기구, ㉞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㉟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등에게 위탁하거나⁹⁰⁾ ㊱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㊲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㊳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㊴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㊵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㊶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㊷ 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는 사람 중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㊸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㊹ 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㊺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⁹¹⁾

다만,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 보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㊻ 예금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위탁업무 종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㊼ 「별정우체국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시설기준에 상당하는 시설 등을 갖출 것, ㊽ 그 밖에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⁹²⁾

90)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9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9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위탁계약의 체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⁹³⁾

제 4 절 소 결

현행 우편 관련 법령은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우편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이 이를 보완·보충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우편법」이 우편사업을 국가가 관장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편사업 내지 우편서비스를 공행정조직을 통해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규율을 우편 관련 다른 법령 등에서 함께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일정한 범위의 우편서비스를 보편적 우편서비스로 규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일정한 요소, 예컨대 제공기준·이용조건·송달기준 등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우편사업을 국가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민간에 의한 우편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93)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우편법의 체계적 규율이나 이해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는 우편사업회계가 결손이 발생할 경우, 대체로 이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여지는 우체국 예금회계로부터 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보편적 우편서비스 관련 현황

현행 우편법령상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은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및 이에 대한 특수취급우편물이다.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⁹⁴⁾

특수취급 \ 보편적 역무	통 상 우 편 물	소 포 우 편 물
등 기 취 급	○	○
통 화 등 기	○	
물 품 등 기	○	○
유 가 증 권 등 기	○	
대 금 교 환		○
내 용 증 명	○	
배 달 증 명	○	○
국 내 특 급 우 편	○	○
특 별 송 달	○	
민 원 우 편	○	
우 편 물 방 문 접 수	○	○
착 불 배 달	○	○
계 약 등 기	○	
회 신 우 편	○	
본 인 지 정 우 편	○	
우 편 주 소 정 보 제 공	○	

94) 우편법시행규칙 별표 1

<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95)

구 분	등 기	배달 증명	국내 특급 우편	착불 배달	회신 우편	본인 지정 배달	우편 주소 정보 제공
등 기 취 급		○	○				○
통 화 등 기	○	○	○				
물 품 등 기	○	○	○				
유 가 증 권 등 기	○	○	○				
대 금 교 환	○	○	○				
내 용 증 명	○	○	○				
배 달 증 명	○		○				
국 내 특 급 우 편	○	○					
특 별 송 달	○		○				
민 원 우 편	○		○				
우 편 물 방 문 접 수	○	○	○				
착 불 배 달	○						
계 약 등 기	○	○	○	○	○	○	○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보편적 우편역무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하며, 우편물 송달기준(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95) 우편법시행규칙 별표2

또한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종류별·지역별로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목표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행목표율의 달성도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⁹⁶⁾

<전국 우체국 설치 현황>⁹⁷⁾

(2015년 2월 27일 현재)

구 분	우체국	출장소	우편취급국	계
서울지방우정청	226	6	205	437
경인지방우정청	397	37	149	583
부산지방우정청	444	10	161	615
충청지방우정청	405	16	107	528
전남지방우정청	344	5	51	400
경북지방우정청	394	10	68	472
전북지방우정청	215	7	34	256
강원지방우정청	166	14	28	208
제주지방우정청	37	-	13	50
계	2,628	105	816	3,549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현황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포함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가 점차 세입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상우편물의 지속적 감소, 택배 및 특송사업과의 치열한 경쟁환경에 따른 수익 감소, 인건비 및 물류비 등의 증가 등을 그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통상우편물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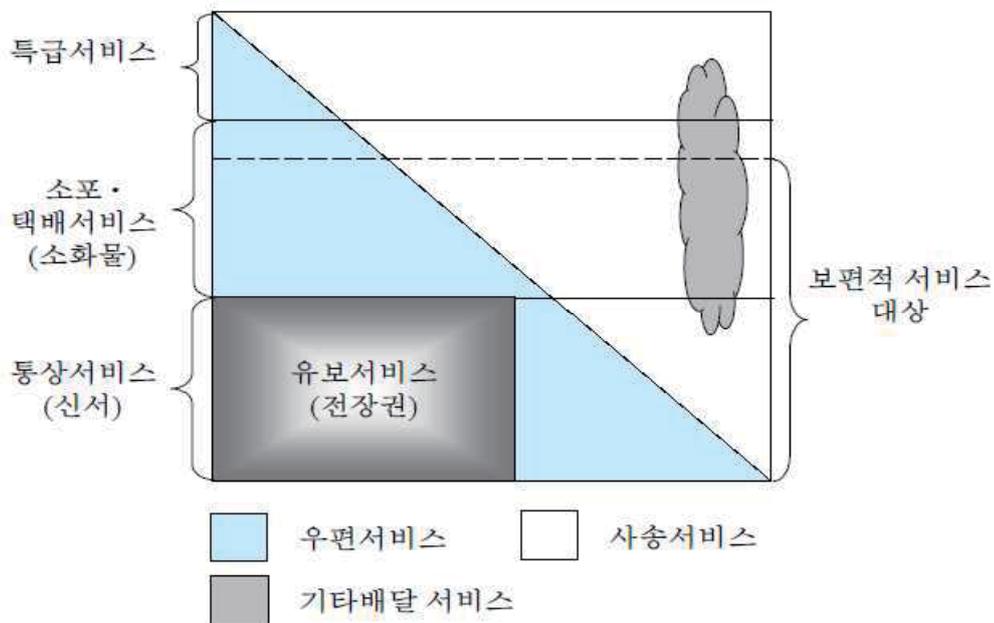
96) 「우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

9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13호

속적 감소와 관련해서는 우편고지서의 온라인 전환, 기업 간 고지서의 통합, 신용카드 우편물의 민간배송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IT 등을 통한 대체통신의 발달로 우편분야의 수익성은 감소되고 있는 반면, 비용은 물가상승 등으로 증가되어 재정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적인 측면에서의 근간은 독자적인 유보영역의 존재였다. 즉, 이러한 유보영역에서의 독점수익을 바탕으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체계였다. 그러나 통상우편물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보편적 우편서비스는 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보편적 우편서비스와 유보 서비스⁹⁸⁾>



98) 최중범, 앞의글, 15쪽.

이는 우편 관련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는 새로운 대체통신수단의 활성화로 인해 멀지 않은 장래에 심각한 위기와 엄청난 도전에 접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편사업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모델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 비용절감, 조직 및 인력 감축 등의 경영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⁹⁹⁾

제 2 절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문제점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비용보전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의 공공성·공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수익성의 측면이나 효율성의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사회적 서비스로서의 형평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관련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편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우편요금을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한편 우편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 요금체계는 전국 단일요금 체계를 취하고 있기에 우편서비스 제공 지역간 상호 보조를 초래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의 여지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¹⁰⁰⁾

99) 안명옥, 우정사업의 위기와 대응 노력에 관한 소고, 우정정보 95(2013 겨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62쪽.

100) 안명옥, 21세기 보편적 우편서비스, 우정정보 58(2004 가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30쪽.

시장 자유화로 서신송달, 택배등 다양한 우편 경쟁 서비스가 출현하고, 새로운 통신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에 필요한 비용조달수단으로서의 우편사업 독점권은 의미는 점차 약화되었으며,¹⁰¹⁾ 심지어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일부 취약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신수단으로서 우편의 유용성 내지는 필요성이 최소화 되어가고 있다는 주장¹⁰²⁾도 가능한 시점임을 고려하면,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비용이나 재원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현행 우편사업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우편사업의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제도적으로 강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즉,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제1항이 그 예이다.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¹⁰³⁾」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출할 수 있다.

101) 최종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편익 추정, 우정정보 97(2014 여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6쪽.

102) 이석범·이경은, 2013년 우정사업 환경변화, 우정정보 91(2012 겨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30쪽.

103) 「정부기업예산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정부기업을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으로 정의하고(제2조),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규정의 의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둔 것이다.

보편적 우편서비스 재원조달 문제로 범위를 압축시켜서 설명하자면 1차적으로는 소위 신서전장권을 포함하는 유보영역을 통해서 비용을 충당하고,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수익으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적자를 보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선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가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단서조항에 따라 우편사업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으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한편 이에 관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조항의 구조가 전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출가능성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손실의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편사업 특히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지속적·안정적 제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는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도록(제3조) 규정하고 있다.

점에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 3 절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개선방안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비용관련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현행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효적인 비용보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감축하는 방안이다.

우선 실효적인 비용보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철도 분야의 공익서비스 비용부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를 ①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에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②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에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 ③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¹⁰⁴⁾ 한편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보상계약에는 ①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②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

10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¹⁰⁵⁾

이는 철도 분야의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부담방식을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 비용범위의 법정화, 구체적인 비용분담을 위한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간 보상계약의 체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편적 서비스의 다양한 속성 가운데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누리는 편익에 비해 비용이 과도하게 큰 것이 있다면 비용-편익 분석에 따라 해당 속성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머지않은 장래 우리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우편서비스 제공 체계가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는 주장¹⁰⁶⁾은 경청할 만하다 할 것이다.

다만 동 제도의 운영현실을 살펴보면 실제 보상률이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우편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손실보상을 위한 계약의 주체가 확정되기 곤란하다는 점이 동 제도를 우편영역에 적용하는데 있어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분야의 비용부담 원칙은 우편분야에도 적용될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

10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106) 최중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편익 추정, 우정정보 97(2014 여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21쪽.

편법령에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편적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우편물의 수집·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이 구현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정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 작업도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우편사업 중 보편적 우편역무와 선택적 우편역무에 대한 각각의 비용/수익을 계상하고, 그 결과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비용이 도출되면 보편적 우편역무에서 발생하는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등에서 보전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을 산정하고 보전액을 확정하는 분명한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에 더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우편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감축하는 방안의 핵심은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현행 우편법령상 보편적 우편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는 2kg이하 통상우편물 및 20kg이하 소포우편물의 범위를 현실여건이나 다른 대체수단의 확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다.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개념을 ‘기본적’인 우편서비스라고 본다면 ‘기본적’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기적

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확인을 위한 분석·검토를 통하여 현재 시점에서 국민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타당한 범위로의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의 접근에서는 범위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우편물의 수집·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조건 등이나 소위 ‘1면 1국 원칙’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 론

전통적인 통신수단으로서의 우편의 의미와 중요성이 변화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내용도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에 의한 우편독점이라는 우편법의 이념적 기초가 변모하여 일부에서는 경쟁요소가 도입되기도 하고, 또한 신서독점권에 의한 비용보전 방식이 일정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한편 다른 보편적서비스와는 달리 우편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조직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 및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편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편사업을 민간이 수행하고 있거나 과거 정부주도의 우편사업에 대한 민영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세계 각국이 우편사업을 공행정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제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우편사업의 체제를 전환하여야만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각국의 현실에 따라 정책적인 결단으로 나타나야 하고, 여기에는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원론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오랜 시간과 수많은 절차와 검증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여 지금 현재의 당면한 과제를 방치해도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또한 명백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포함한 우편사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유지를 위한 비용보전의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하여야 하는 단기적인 대응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편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결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선결문제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과 아울러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계속해서 미루게 될 경우 장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김지훈, 방송·통신의 융합과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공법적 고찰,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2009
- 이광윤, 공공서비스 개념의 범세계화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 21집, 2004
- 이상규,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이석범·이경은, 2013년 우정사업 환경변화, 우정정보 91(2012 겨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 안명옥, 우정사업의 위기와 대응 노력에 관한 소고, 우정정보 95 (2013 겨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 _____, 21세기 보편적 우편서비스, 우정정보 58(2004 가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 조은기, 방송·통신 융합의 정책이념, 제9회 방송통신포럼자료, 2005
- 최중범,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한 소고, 우정정보 65(2006 여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 최중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편익 추정, 우정정보 97(2014 여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